

세출예산 집행 해설

최 두 선

행정자치부 재정과 행정사무관

지난 5호에서는 지출의 특례인 선금급과 개산급, 과년도지출, 세출예산의 이월, 신용카드사용요령,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의미와 특징,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I.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의미

1. 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는 계약은 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의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사법(私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는 계약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공권력을 집행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행하는 거래행위로 본다.

〈판례〉 낙찰취소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96.12.30 누 14708)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이기도 하지만 자치단체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서도 이러한 원리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수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또한 사법상계약이므로 민법상 일반원칙인 계약자유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판례〉 계약금액 감액 사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90.11.28, 사건 90-다카 3659)

사업자의 책임에 속하는 원가계산 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 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특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나 국가계약이 사인(私人)계약과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간의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란 자치단체 계약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민법외에 별도의 계약관련 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개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은 금지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집행의 공익성·공정성·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II. 계약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구 분	공 사		물품제조·구매, 용역		조달구매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광 역	기 초
본 청	예정금액 5~6억원미만	예정금액 5천만원미만	예정금액 2억원미만	예정금액 3천만원미만	금액제한 없 음	금액제한 없 음
제1관서 및 기타관서	예정금액 2천만원미만	예정금액 5백만원미만	예정금액 1천만원미만	예정금액 200만원미만	"	"

※ 지방의회(사무처)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함(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경리관, 분임경리관, 대리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상기 표와 같다.

한편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1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나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5천만원

이상 조달수요물품, 5만불이상 외자구매는 중앙의무조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조달청장과 사전 서면협의 없이는 자체발주가 불가능하고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하고 있다.

〈의무조달 의뢰 대상과 자체계약대상〉

구분	조달청 의뢰(의무)	자 체 계 약
공사	○ 추정가격 100억이상 P.Q공사 ○ 대안입찰공사 ○ 일괄입찰공사 ※ 근거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 1항	○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 조달요구 대상공사로서 천재·지변·긴급한 행사 - 재해 및 사고의 긴급복구공사 - 시설·감독·하자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한 공사로서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 한 경우
용역	○ 의무적으로 조달의뢰할 대상용역은 없음 ※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의뢰할 수는 있음	○ 모든 용역계약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계약 체결 가능함
물품	○ 조달청장이 조달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요물자 ※ 근거 :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① 천재·지변·긴급한 행사의 물자구매 ②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는 경우 ③ 소액인 경우로서 5,000만원(내자), 50,000\$(외자) 미만 ④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직접구매토록 한 경우 ⑤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감사 사례 〉

제 목 :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계약업무 등 부적정(주의)

○○광역시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경간장이 50m 이상인 교량(외항교)이 포함된 공사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계약을 맺어야 함

그런데도 1999.8.20 위관 서 도시개발과로부터 위 공사의 계약을 의뢰받은 회계과는 위 계약법령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해 10. 4. 조달청장으로부터 “위 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할 공사로서 자체발주할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선람 하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자체 발주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계약을 맺어야 할 공사를 자체 발주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을 요구

〈 질 의 회 신 〉

〈 질 의 〉

○ 당초에는 ○○군청에서 군도확포장공사를 낙찰받아 공사도중 지방도(道)로 승격되어 동일 도로에 대하여 ○○도청에서 다시 발주를 하는 경우 도청에서 새로운 낙찰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하는 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예산이체 등으로 당해 공사계약 관련 예산주무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체결되어 이행중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이며 다만,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 명의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중앙의무조달제도는 과거 중앙집권 시절에 효율적인 물자조달 및 예산절감차원에 서 시행하여 왔으나 참여정부 출범이후 자율과 분권의 국정원리에 따라 의무조달제도를 임의조달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를 다 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조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전문지도기관 설립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계약의 법령체계

계약에 관한 법령체계는 법령이나 기준 등의 종류가 매우 많고 복잡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조문, 어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70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지역특수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5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한 계약관련기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주요 계약 관련 법령 및 기준

구 분	국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지역의무 공동도급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 률시행령 제72조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 추정가격: 공사244억원, 물품용역 3.2억원 미만(기초는 무제한)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2000. 12. 30) - 공사 : 추정가격 78억원이상 - 용역·물품 : 추정가격 2억원이상	○ 행정자치부장관 고시금액 (고시 제2002-24호, 2002.12.30) - 공사 : 추정가격 244억원이상 - 용역·물품 : 추정가격 3.2억원이상 (기초는 해당없음)
적격심사기준	○ 재정경제부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고시)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 -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98호)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99호) -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100호) -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101호)
기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	○ 각 부처에서 기준제정 →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② 계약관련 주요법령, 예규현황

구 분	내 용	
자치단체가 국가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는 법령·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공사기술용역·물품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 국제입찰에 의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자부고시)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자부예규) ▶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건축사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물품관리법령, 폐기물관리법령, 소방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문화재보호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정부투자기관기초관리법령, 지방공기업법령,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법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산림법령, 장애인복지법령, 어항법령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준을 준용하는 법령·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회계예규(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내역입찰집행요령 - 종합계약집행요령 - 실비산정기준 -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계약실적 보고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경제부 고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입찰 집행기준 -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요령 -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요령

〈 질 의 회 신 〉

〈 질 의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지

〈 답 변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동 공사·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IV.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일반적으로 ① 예산 편성 및 배정 ⇒ ② 사업계획수립 ⇒ ③ 예산집행품의 ⇒ ④ 원가계산 및 설계 ⇒ ⑤ 계약방법 결정 ⇒ ⑥ 입찰 등 절차이행 ⇒ ⑦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①~③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⑤~⑦절차는 계약부서에서 회계관직자인 경리관(분임·대리포함)과 그 보조자가 결정하게 된다.

그 중에서 계약방법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계약방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정업체 선정, 적정한 계약금액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계약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계약의 종류를 이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계약의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방법도 결정을 해야한다.

계약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계약 목적물별	계약 체결 형태별	경쟁 형태별	계약 목적물별
○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소방공사 - 환경관련공사 - 문화재관련공사 - 정보통신공사 등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계약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 적격심사낙찰제도 ○ 최저가낙찰제도 ○ 희망 수량경쟁입찰 ○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 ○ 2단계 경쟁입찰 ○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모에 의한계약

1. 계약목적물별 계약의 종류

계약은 크게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구할 수 있다. 세입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자치단체의 수입과 관련되는 계약으로서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 입찰이 기본원칙이다.

세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은 크게 공사, 용역, 물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사는 다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환경관련공사, 문화재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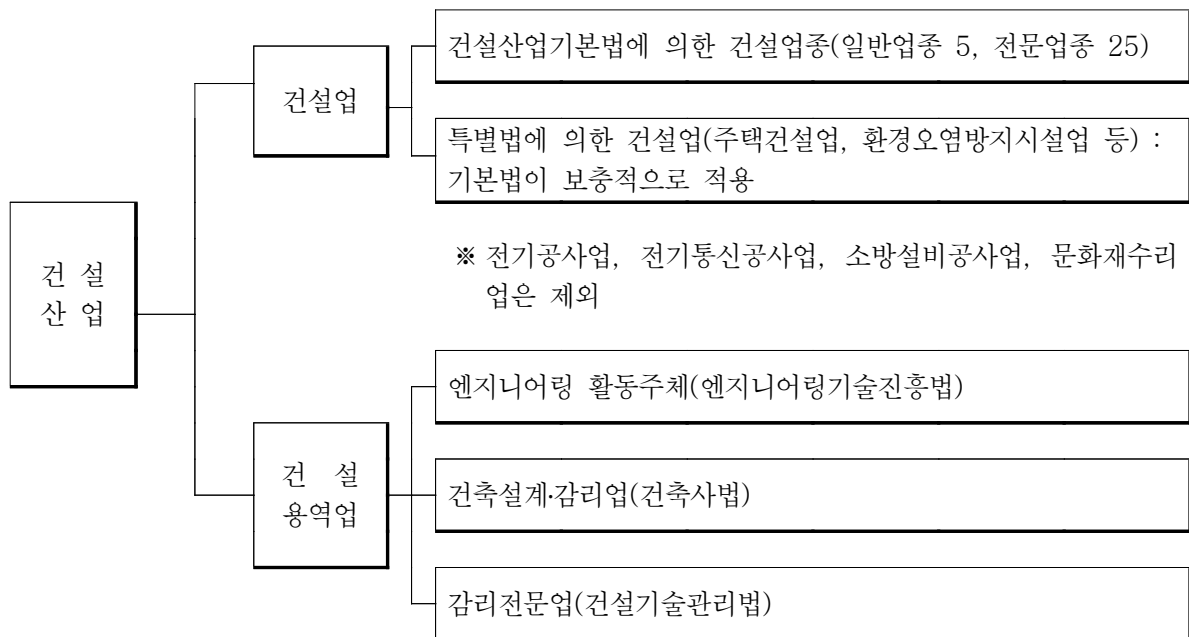
공사를 이처럼 구분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건설산업을 구분 해보면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일반업종 5

종(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과 전문건설업 25종(토공, 실내건축, 상·하수도, 설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에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으로는 주택건설업, 오수정화시설시공업, 분뇨처리시설시공업, 축산폐수정화시공업, 수질·오염방지사공업 등이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공사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문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반건설공사와 전문건설공사를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데 있다.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 만을 도급받을 수 없으며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부대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부 대 공 사〉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공사

공사의 종류가 선택되면 우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입찰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 자격요건을 정해야 한다.

용역은 크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된다.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용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용역은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으로서 청사관리, 시설관리, 폐기물처리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용역과 공사발주시 그 부분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들면 건설폐기물처리나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용역으로 발주해야 하나 시설공사로 발주하여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와 용역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물품은 크게 물품구매와, 물품의 제조구매로 구분되며 물품제조 및 구매는 조달수요 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건당 5천만원이상 내자구매, 5만불(미하)이상 외자구매는 반드시 조달의뢰 토록 하고 있다.

2.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① 확정계약과 개선계약, 사후원가검토조 건부계약

확정계약이란 원가산정이 가능한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로서 대부분의 계약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개선계약이란 개발시제품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계약 등 미리 원가계산에 의한 계약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선계약을 체결한다.

개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입찰전에 계약 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해야 하며 입찰참가자에게 이 기준을 사전 열람 등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도는 행정자치부에 시·군·구에는 시·도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선계약은 발주당시에 원가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이며 개선계약도 우선 개략적으로 예정가격을 정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사후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한다.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은 개산계약과 동일한 유형이나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가 원가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은 계약목적물 중 일부분에 대하여만 원가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일정부분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개산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사례〉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로수청소업무를 민간위탁계약하여 시행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지하에 매설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포함된 경우

〈감사사례〉 사후원가 정산을 소홀히 하여 물품대금 과다지급

원가계산 수입기관이 계약물품의 일부부품에 대하여 수입확정 후 수입면장에 의하여 가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원가계산을 하였음에도 정산자료 확인 없이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수입면장에 의하여 재확인 결과 4,119만여원 상당 과다지급 됨.

3. 총액계약, 단가계약

총액계약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계약형태이며 단가계약은 동일한 수량의 물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물건 1개당 단가

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태이다.

단가계약의 경우에도 물량 전체에 대한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방법을 정하지만(예시: 추정가격 3.2억원 미만은 최저가입찰) 가격 입찰을 하는 경우 단가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4. 장기계속계약, 단년도계약,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이란, 계약기간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로서 예산은 단년도만 확보되고 나머지 연도예산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라도 일단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차수별(연차별)로 체결하는 형태이다.

계속비계약은 장기계속계약과 동일하게 수년을 요하는 경우이지만 예산이 계속비로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총액으로 입찰하고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이다.

※ 장기계속계약의 특징

- (가) 예정가격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 (나)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 (다) 산출명세서 : 입찰금액 또는 낙찰금액 기준
- (라) 계약금액 : 매년 계약분만 계약금액이 되고,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은 부기함
- (마) 계약보증금과 연대보증인 : 낙찰된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 기준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예산확보	미확보(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약체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년도 예산범위안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 (연부액 부기)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 입찰계약

(바) 공정표작성 : 이행 연도분만 작성

(자) 하자보수보증금 : 매년 하자책임 구분 이 명확한 것-매년

(사) 계약금액 조정 : 총공사비, 총제조금액 기준

매년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것-전체

(아) 선금과 지체상금 : 계약이행연도 분 기준

이행 분 기준

〈질 의 회 신〉

〈질 의〉

○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준공처리, 지체상금부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 연대보증인의 입보 방법은

〈답 변〉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준공처리하여야 하며, 지체상금도 연차별로 산정·부과하는 것임.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매년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도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전체공사 완공후에 일괄적으로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매년도 계약 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체공사 완공 후에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함.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입보된 연대보증인은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가 있으며, 제 2차 이후 계약이행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증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임.